

#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을 위한 실천사항

## I. 목적

이 실천사항은 (주)부영그룹이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」에서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하도급법”이라 함)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## II.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 실천사항

### 1. 기본원칙

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·운용하는 내부 심의위원회의 자율성,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·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### 2.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 실천사항

#### 가.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

- ①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.

#### 나.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

- ①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.
- ② 현안 발생 시 수시로 내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.

#### 다. 내부 심의위원회 심의내용

- 1) 내부 심의위원회는 50억 이상의 하도급 거래 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,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  - ①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
  - ②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준수여부
  - ③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준수여부
  - ④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
  - ⑤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
  - ⑥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
- 2)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등록·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.
- 3)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야 한다.
- 4) 필요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- 5)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6)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